

제2640호
2019. 3. 11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| | |
|---|------|
| 선 | 기관의장 |
| 람 | |

구 보

● 규 칙

제70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람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

| | |
|---|---|
| 규 | 칙 |
|---|---|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3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5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 표]

자원봉사자 살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[제18조제1항 관련]

| 구 분 | | 기 준 | 금 액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자원봉사자 | 일 반 | 1일(2시간 ~ 8시간) | 7,000원 |
| | 실무전담 | 1일(4시간 ~ 8시간) | 20,000원 |
| 강사 | 프로그램 강사 | 시간당 | 24,000원 ~ 35,000원 |

※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| |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| 기 준 | 금 액 | 구분 | | 기준 | 금액 |
| 자 원 봉 사 자 | 일 반 | 1일(2시간 ~ 8시간) | 7,000원 | 자 원 봉 사 자 | 일 반 | 1일(2시간 ~ 8시간) | 7,000원 |
| | 실무 전담 | 1일(4시간 ~ 8시간) | 20,000원 | | 실무전 담 | 1일(4시간 ~ 8시간) | 20,000원 |
| 강 사 | 일 반 (어학, 학습, 인문학, 삼천년 문화교양, 취미, 연기 어르신 등) |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한자, 미술, 컴퓨터, 사예, 수목화, 한국화, 수채 화, 꽃꽂이, 수자침, 관상학, 풍수학, 종이접기(공예), 논술, 주산, 하모니 카, 통가타, 단전호흡, 기공체조, 탁구, 발레, 요가, 건강체조, 타이 치, 킷트 등 | 시간당 24,000원 | 강 사 | 프로 그램 강사 | 시간당 | 24,000원 ~ 35,000원 |
| | 레크리 에이션 (활동 전통예술 등) | 가요(노래)교실, 국악, 민요, 사물놀이, 댄스(스포츠, 웰빙, 차밍, 라인, 밸리 등), 에어로 빅, 드럼, 밴드교실, 한국무 용 등 | 시간당 35,000원 | | ※ 강사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,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. | | |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사수당 지급금액 범위조정 및 기준범위 외 지급 가능 단서 조항 신설 필요

2. 주요내용

-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급 기준 통합 및 지급 금액 개정 (시행규칙 [별표])
- 강사수당의 기준 범위 외 지급 가능 규정 신설 [별표] 단서 신설